

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·응답

※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-79호 관련, (2025.5.1. 적용)

연 번	질의	답변
1	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발생한 재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?	<p>○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재협착의 경우 :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복 사용 시 약물의 특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함</p> <p>○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 : 일반풍선카테터 사용. 해당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은 금기사항으로 급여제외 대상임</p>
[참조] 동정맥루 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 기준	<pre> graph LR A[동정맥루 협착] --> B[PTA BALLOON CATHETER 사용] B --> C[조기 재협착시 (3개월 이내)] C --> D[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] D --> E[재협착] E --> F[3개월 이내] F --> D </pre>	
2	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떤 내용을 기재 하는지?	<p>○ 요양급여 청구시 출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“JX999 (기타내역)”란에 “PTA/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적용 이전 경피적혈관성형술(PTA) 시행일”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재형식: X(3)/ccyyymmdd ▶ (예시) JX999 PTA/20250201